

2024년 충남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2차 공고

도내 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기업 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·운영 진단 및 솔루션 도입 비용을 지원하고자 「‘24년 충남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」을 2차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7월 22일

충남테크노파크 원장

I. 사업개요

□ 추진목적

- 충남 소재 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 및 지속적인 구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규모 제조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저변 확대
- 도내 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기반 구축

□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4개월 (1개월 연장 가능)

□ 사업내용 : 소기업 맞춤형 ICT연계 스마트 생산시스템 구축비 지원

□ 총괄기관 : 충청남도 및 14개 시·군

□ 수행기관 :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

II. 지원대상

□ 신청자격

- 충청남도 소재 제조 소기업
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별표3* 기준에 의한 제조 소기업
- * [첨부-1] 지원대상 소기업(제조업에 한함) 규모 기준 참고
-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(소기업)를 소지한 제조기업

□ 지원제외대상

○ 공통사항

- 과제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‘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’을 수행 중이거나, ‘24년 고도화1에 선정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(신청일 기준 집중AS기간인 경우는 사업 신청 가능)
- **2023년 소기업형 및 지역균형발전형 구축지원사업 과제 수행 도입 기업은 지원대상 제외**
-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-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|
| · 휴·폐업중인 기업 | · 장비 도입이 주 목적인 기업 |
| 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| 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 |
| *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이후에도 임의취소 가능 | 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|
| *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‘참여제한’ 중인 기업 | |

II. 지원내용

□ 목표 현황

No	지 역	목표
1	계룡시	1
2	당진시	3
3	부여군	2
4	정양군	2
5	예산군	1
총계(개사)		9

□ 총사업비 : 기업당 최대 25,000천원

- 지자체 지원금 : 총사업비의 90% 최대 22,500천원 (충남도 10,000천원 시·군 12,500천원)
- 기업 자부담금 : 총사업비의 10%, 2,500천원 (자부담금 납입 후 사업 착수)
- * 총사업비 및 지자체별 예산소진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 변동가능
- ** 총사업비 25,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기업에서 부담
예시) 지원금액 22,500천원(90%) + 기업자부담금 2,500천원(10%) = 총사업비 25,000천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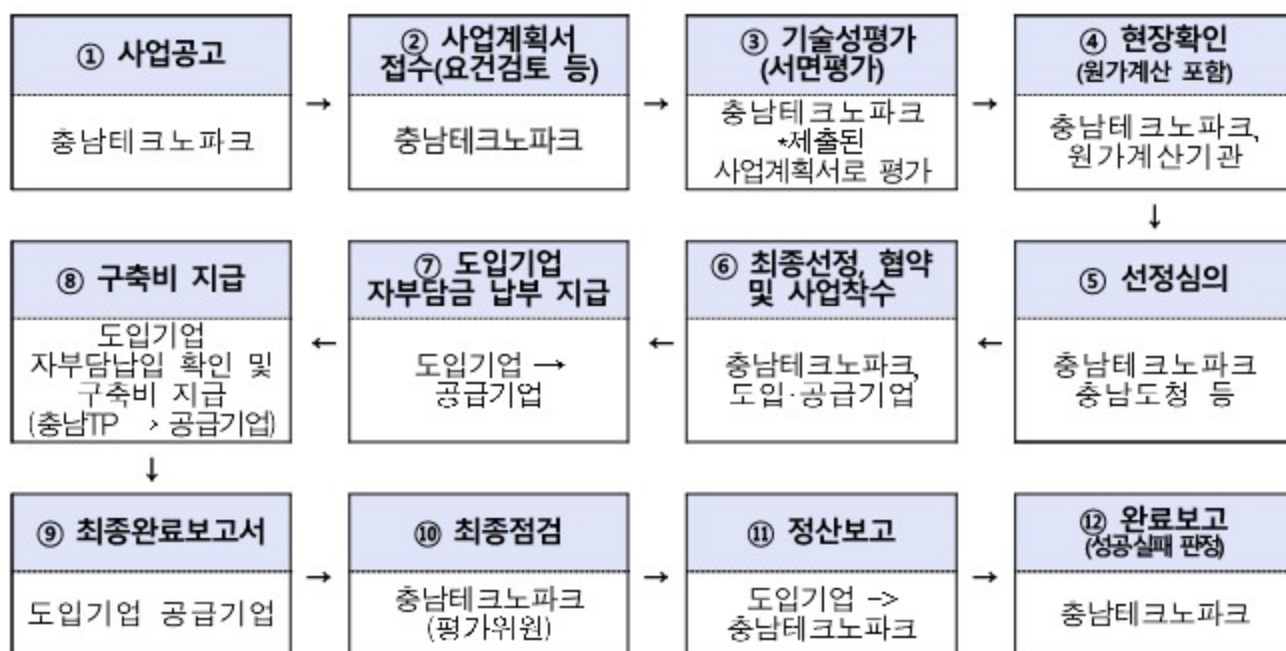
□ 지원내용

- 스마트공장 기반 “생산자동화 장비/설비, IT시스템” 구축비 지원
 - 도입기업-공급기업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는 원가계산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, 3자 협약(충남테크노파크-도입기업-공급기업) 진행

[구축 솔루션 가능범위]

분 야	상세내용
ICT연계 간이 생산시스템	- 품질관리 : 불량등록, 초중종물관리, SPC분석, LOI 추적 - 생산관리 : 생산계획 등록, 생산실적 관리, 생산지시 - 출하관리 : 출하계획 등록, 출하현황, 창고재고관리 - 공정관리 : 작업일보 관리, 공정현황모니터링 등
ICT인계 간이 자동화	- 가공(조립) 자동화 : 1인셀, 블록셀, 자동공급장치, 포장기 - 물류자동화 : AGV, 창고관리시스템 - 검사자동화 : 비전검사기 - 모니터링자동화 : 이물·온습도, 정전기(ESD), 진동, 소음, 조도 등
환경안전 시스템	- 환경 : 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(누액, 누수) - 소방 : 열화상 감지시스템, GAS 모니터링 시스템 - 보건 : 환기 시스템, 근골격계 질환예방 시스템 - 안전 : 위험기계/기구 안전장치 관리 시스템 등 ※ 단, 도금공정/분진발생공정/위험물사용공정 등 생산직접공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환경안전 시스템에 한함

III. 지원절차



IV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- (신청기간) 2024년 7월 22일(월) ~ 2024년 8월 23일(금) 17시 까지
- (신청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 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 - ※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,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(공급기업 폴 공지 참조)
 - ※ 예산 소진시까지 모집예정이며,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 모집종료 할 수 있음

- (제출서류)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(온라인 접수 시 첨부)

구분	온라인 등록 서류
1	사업계획서
2	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3	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* 단, 종원사업장의 경우 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원사업장 명세” 추가 제출
4	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('22년, '23년) *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행 *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(http://total.kcomwel.or.kr)에서 발급
5	소기업확인서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발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
6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

- 문의처

기관명	연락처
(재)충남테크노파크	041) 589-0727 / 0715 / 0719 jykim@ctp.or.kr / kjh1357@ctp.or.kr/ han0373@ctp.or.kr

V. 선정절차 및 방법

※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·변동 될 수 있음

□ 선정절차 및 평가 기준

- ① 기술성평가 → ② 현장확인 → ③ 선정심의(선정)

구분	기술성평가	현장확인	선정심의
선정절차 및 방법	-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과제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파악하고 서면 방식으로 지원 적합성을 평가	- 최종점수 고득점 순으로 사업계획서와 현장일치 여부를 현장확인을 통해 적/부 판정	- 최종점수 및 현장확인 특이사항 의견 등을 상정한 안건으로 선정 심의의결
	- 기술성평가 점수(100%)를 반영한 점수에 신청 우대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산정	- 사업계획서 내용 및 가점 여부 확인	- 선정·후보·탈락 여부 통보

* 현장확인에서 부적합 1개이상 및 부정사례 발견 시 선정심의회에서 탈락과제로 안건 상정

① 기술성평가 : 도입기업 역량, 스마트공장 구축의 필요성, 지원의 적정성 등을 평가

<기술성평가 항목>

평가 항목		배점
도입기업 역량	◦ 상시 종업원 수, 매출액, 수출액(해당되는경우), 영업이익,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?	10
	◦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(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)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	10
	◦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?	10
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	◦ 스마트공장 구축 "주요 내용"의 범위가 명확하고, "목표수준"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?	10
	◦ 수행하고자 하는 "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"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·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, "목표수준" 달성에 적합한가?	10
	◦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? (구축목표 - 구축내용 -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, 기존수치/목표수치의 근거제시, 지표 계산식 제시,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)	10
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	◦ "데이터집계 포인트"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(자동, 반자동, 수동)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	10
	◦ "솔루션 기능 구성도"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?	10
	◦ "추진조직 및 업무분장"과 "지원계획" 등에서 도입기업/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?	10
	◦ "추진일정 총괄표"와 "산출물 예정 목록"간의 단계가 일치하며, "산출물 예정 목록"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?	5
	◦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(기술력) 및 투입인력(개발PM 등)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?	5
합 계		100

② 현장확인 : 사업계획서 대조·확인 및 가점 여부 확인

* 공장의 정상가동 여부, 공정 및 설비 등 일치, 신청가점 사실여부 등

<현장확인 항목>

확인 항목		확인여부
사업계획서 대조·확인	◦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(휴·폐업 등)	적/부
	◦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, 설비 등 일치 여부	적/부
	◦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(정상가동 등)	적/부
가점여부	◦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	-

VI. 기타사항

- 우대가점 : 기술성평가 시 최대 5점 반영가능(공고일 기준)

-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충남에 본사 또는 사무실이 있는 공급기업과 매칭 : 3점 |
| ② 도입기업 본사 소재지가 충남일 경우 : 3점 |
| ③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 : 2점 |

- “2024 충남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”은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을 수행한(~23년) 이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
(신청일 기준 집중AS기간인 경우 사업 신청 가능)
(단, 스마트공장(동일수준) 사업을 진행한 경우는 신청불가)
- 공급기업 선정은 최종적으로 도입기업이 결정하며,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
- 총 사업비 중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한 초과비용은 도입기업 부담임